

2005. 3. 31(목) 10:00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심 사 보 고 서

1.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

총 무 위 원 회

#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5. 3. 1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3. 16

다. 의안번호 : 제2005 - 8호

라. 상정일자 : 2005. 3. 29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조례명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함.
- 위원회 기능 중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를 필요시 계속연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로 제한함(안 제5조)

### 3.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당초 제정근거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 1. 14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기존의 토지가격외 주택가격공시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검토됨.
  
- 동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토지평가위원회는 군민의 재산을 평가하는 점안 감안 하여 위원회 교체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기 바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3차)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5. 3.1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3. 17
- 다. 의안번호 : 제2005 - 10호
- 라. 상정일자 : 2005. 3. 29

##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제안이유

- 생활쓰레기의 성상변화와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매립장의 사용기한이 상당기간 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매립방식에서 소각후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함.

### 나.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89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 다.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구분	소재지	물건	수량 (㎡)	예정금액 (백만원)	비 고
신축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 일원	건 물 (소각시설)	991 (1식)	7,000	국비 2,100 군비 4,900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승인대상에서 제외, 소각시설은 열조합시설로 일30톤 처리규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처리용량을 일30톤으로 정한 것은 현재의 매립규모를 감안 환경부장관이 설정한 것으로 첨단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현 시설로는 소각 처리 하지 못하고 매립처리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소지가 있음.
- 동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적용하는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 추진하려는 것이나, 성공불제 방식은 토목, 건축공사부문 발주에 적용 가능하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성공불제시행 국내 시행사례가 없음. 기설치한 지자체에서 소각로시설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우리 군에서 모험을 강행하면서 성공불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전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성공불제 추진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대상부지는 폐기물처리 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시설설치에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쓰레기소각로사업을 국내 최초로 성공불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만큼 대상업체 선정등 모든면에서 신중한 대처를 요망함.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